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

국 무 조 정 실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전화 02)3703-3926 /전송 02)732-7155
규제개혁1심의관실 과장 최기조 서기관 정현용

문서번호 국무규제05090-1499

시행일자 2000.9.27 ()

(경유)

수신처 수신처 참조

참조 규제개혁담당관

제목 「규제정비지침」 시달(국무총리 지시 2000-25호)

보존기간	1	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조정관	장기정	국무총리	
심의관		기획심의관 노고	
과장			
기안	정현용		
심사자	김현숙	심사일	2000-9-27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가 추진할 규제정비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규제정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15~16, 19~20, 31~47, 52~55, 57~67

國務總理 指示
第2000-25號

規制整備指針

2000.9.

國務調整室

< 목 차 >

I. 규제개혁 추진방향

II. 주요 내용

1.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2.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중점추진
3. 부처별 잔존규제의 마무리 정비

III. 행정사항

<첨 부>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별 책> 지식정보화 추진과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I. 규제개혁 추진방향

- 지식정보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21세기 정보 강국 건설을 조기에 실현
-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관련 규제를 중점정비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부처별 잔존규제를 재검토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규제개혁을 마무리



선진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겨 구현하여
세계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

II. 주요 내용

1.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추진경위

- 2000. 5월, 대통령께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추진 지시
- 2000. 8월, 각 부처의 추진계획과 전문가 작업단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초안 마련
- 2000.9월초, 경제5단체 및 시민단체(경실련,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 2000.9.15, 제60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2000.9.19, 대통령 보고

□ 추진방침

- 정보화 투자 및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함께 「지식정보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정보강국 건설을 조기에 실현
 -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조기 철폐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개선·정비
 -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 조치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2000.12.31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세부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2001.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

※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 별책자료 참조

2.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중점추진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

- 행정자치부는 2001.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을 적극 지원
 -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결과를 평가하고 우수자치단체의 개혁 사례를 전 기관에 확산 시행
 -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등 부여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종합, 매 분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내부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

- 중앙행정기관의 내부규정 및 정부산하 또는 유관단체·협회·법인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정비작업을 마무리
 - 규제개혁위원회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내부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모델을 개발·수립(2001년 상반기)
 - 각 부처는 동 모델에 따라 개혁작업을 추진, 정비결과를 규제 개혁위원회에 통보(정비작업추진시 노동부 추진사례 참조)
- ※ 향후 규제개혁 상시점검단의 이행실태 점검시 내부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실태를 중점 확인·점검

□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개혁사항 전체에 대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등 규제가 현장에서 집행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관리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결과의 시행여부를 확인, 반기별로 규제 개혁위원회에 통보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업무의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규칙의 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통보
-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행자부·산자부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 개혁작업단 및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

□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규제개혁 추진

- 부처별 「규제개혁신고센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생활편의와 관련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 및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반영
-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상시 협조체제 유지
 -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규제정비 과정에 반영
 - 주한 외국기업인단체(Amcham, Japan Club, EU상공회의소 등)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규제개혁 관려의견 수렴
- 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 등의 외부전문가와 규제개혁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지속 교환

3. 부처별 잔존규제의 마무리 정비

□ 2000년도 미추진 중점과제의 정비

-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중점개혁과제중 2000년말 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과제는 2001.3말까지 모두 마무리
 - 각부처는 소관과제중 2000년도 미추진 예상과제에 대해서는 상정일정을 조정하여 2000.12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 통보
 - 개선방안의 마련시에는 피규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드시 첨부

□ 잔존규제의 마무리 정비

- 기타 잔존규제에 대해서도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또는 폐지하여야 할 규제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기업활동의 자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제적 규제는 최대한 완화
 - 환경·식품·안전 등 사회적 규제도 최소한의 규제만을 남기고 인센티브 등 규제대안을 개발·강구
 - 특히, 다른 나라에는 없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철저히 정비

III. 행정사항

1.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 제출(해당부처) : 2000.12.31
 - 세부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2001.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
- 2000년말까지 정비완료키로 한 규제의 정비결과 제출(해당부처) : 2000.12.31
 - 세부 추진과제중 2000년말까지 정비완료한 과제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 기타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 등을 위한 규제정비결과 제출(해당부처) : 2001.10.31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2.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중점추진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침 시달(행정자치부) : 2001.1월중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행정자치부) : 2001년 매 분기말
- 내부규정 및 유사행정 규제의 정비
 - 정비모델 수립 · 통보(국무조정실) : 2001.6.30
 - 부처별 규제정비결과 제출(전부처) : 2001.9.30
-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결과 시행여부 확인결과 제출(전부처) : 2001년 매 분기말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국무조정실) : 2001년 매 분기별

3. 부처별 잔존규제의 마무리 정비

- 2000년도 미추진 과제 정비계획 제출 : 2000.12.15

添附 資料

知識情報化社會具現을 위한
規制改革推進方案

2000. 9.

國務調整室

< 목 차 >

I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규제개혁의 과제.....	1
II. 규제개혁추진 기본방향.....	2
III.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	
1.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3
2.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7
3.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9
4.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11
IV. 추진계획	12

I.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규제개혁의 과제

- 우리사회는 지난 97년말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한 외환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양
 - 그러나, 우리사회는 선진국뿐아니라 주변 아시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봉착
 -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이 존중받는 역동적 경제사회가 시현
 - 이러한 환경변화로 우리 사회는 다음의 3가지 도전에 직면
 - ① 투입요소 확대중심의 성장에서 생산성·지식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의 문제
 - ②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불합리한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문제
 - ③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
 - 21세기 선진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
- ⇒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화社会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규제개혁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II. 규제개혁추진 기본방향

< 목 표 >

-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경제·사회·행정
제도 전반의 과감한 혁신
 - 새시대 지식창출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식의 확산기반을 구축

-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정비
 - 선진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겨 구현함으로써 세계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



주 진 방 짐

-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조기 철폐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개선·정비
-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III.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

- 1.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 2.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3.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4.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1.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 ◆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 ◆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각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개선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또는 행정기관간 조회·확인이 가능한 증명민원은 원칙적으로 폐지
-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민원의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결과의 통지 시에도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처리를 전산화하여 부패·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건설공사 인허가 전산화, 전자입찰제, 세무신고 전산화 등의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특허 및 표준, 품질인증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국가표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
 - 기술개발 및 특허관련 절차상의 규제를 혁신하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장려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촉진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연구인력의 유동성과 해외우수 인력의 유치를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
 -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컴퓨터·인터넷의 보급 등 변화된 연구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
- 지식의 자본화 추세에 부응하는 관련 규제의 개선
 - 생명공학기술권, 데이터베이스권 등 신지식 재산권을 외국인 투자 대상 목적물에 포함하고 부당한 지적 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제를 개선
- 미래의 핵심산업인 생명공학산업의 지원·장려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문제는 제한하되,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학연구는 허용도록 하는 법령 제정 추진
- 사이버 무역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외활동관련 장애를 제거하는 한편, 사이버 기술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정비

1-3.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금융지식·정보전문가의 금융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금융서비스업의 설립자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 전문가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
- 금융기관의 경업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경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 금융기관의 보안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프로세싱 분야 등 혁신의 진출을 허용
- 인터넷 은행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
 - 기존 은행이 인터넷 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자본금 요건을 최소화
- 선물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
 -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문유형을 다양화하고 일임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신용평가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증권사의 장외채권 거래 정보의 실시간 공시체제를 구축

2. 지식과 정보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

-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장소개념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자거래 및 물류정보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 각종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무소 요건, 상시 고용인 수, 출석발언조건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설·자본금 요건 등을 대폭 완화
-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및 원격진료 제도도입 등 Cyber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

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주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전자문서의 효력, 효력의 발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망 운영자, 배송업자 등 전자거래 관련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
- 표시 및 광고제한 등 통신 및 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전자화폐시대의 도래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
 - 전자화폐 발행자격, 이용자 보호방안, 위·변조 방지대책 등에 관한 제도 정비

2-3. 지식정보의 공유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정비
 -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전산화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 지형·도로·지하매설물 등 공익적 공간관련 정보의 유통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 측량제도를 합리화하여 측량기술 및 성과의 원활한 상호이용을 촉진
-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이용자중심의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지능형 교통체계(ITS) 수립에 필요한 ITS시설물 설치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부문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민간부문에서도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 CAL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제정비
 - 건축물 및 시설물 준공서류를 전자화방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각 건설업자가 공유·활용할수 있도록 공개범위 및 절차 등 제도 정비
 - 건설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시공 등 건설생산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저해하는 규제의 정비
- 출판, 인쇄, 음반, 게임, 방송 등에 관한 규제를 Cyber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디지털 지식정보의 유통 및 이용을 활성화

3.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민간주도·수요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체제로 개편
- ◆ 고용의 유연성 및 열린 노동시장의 구축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3-1.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 Cyber대학·학원의 설립·운영 등 사이버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Cyber대학·학원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
-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확산, 다양한 대안학교제도 마련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규제 개선
 - 경쟁원리에 따른 교육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율학교」·「특성화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허용
- 조기유학규제 완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자율화 등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외국인학교의 인가요건 완화·외국인 학교에의 입학 허용 등 교육개방을 확대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대학간 통합·연계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설립 및 폐교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치를 확대
- 영재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자율적인 학년·반편성 및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제 및 영재교육 교과서의 사용을 자율화
-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 학생·교사의 정보소양증진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원정보화 연수 등을 추진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용 관련제도를 개선

3-2. 새로운 직업창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훈련, 사내직업교육 등 직업훈련제도상의 규제개선
 - 공공훈련의 훈련직종을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게 개편하고 민간훈련기관 평가체제를 성과위주로 전환하여 내실화 추진
- 각종 직업능력인정제도에 관한 제도의 개선
 -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자격제도 관련규제를 합리화
- 재택근무, 복수직장근무, 근무시간제도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노동법상의 각종 규제의 개혁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근로자 파견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문직 및 파견근로자의 근무형태 다양화

4.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사이버시대의 개인·소비자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현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통신판매시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제도 도입
 - 기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자의 범위를 확대
 - 민간의 암호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
-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개인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금융·통신·운송·에너지 시설 등 주요기반시설의 정보통신 시스템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풍속·청소년관련 규제의 합리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 추진
 - 청소년 게임장·PC방 등의 음란프로그램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IV. 추진계획

-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부처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비작업을 추진(17개 부처, 81개 과제)
-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비필요성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규제정비작업에 착수, 연내 마무리 토록 하고 금년말 규제정비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기타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도 2001.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1년말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을 완료

<첨 부> 분야별 추진과제 목록

1.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행자부
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규제정비	행자부
③ 정보통신망이용 민원의 신분확인관련 규제개선	행자부
④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재경부, 조달청
⑤ 자동차민원행정 간소화	건교부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① 표준화 시스템의 재정비	산자부
② 단체표준의 활성화	산자부
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산자부
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	특허청
⑤ 신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특허청
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통계청
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	특허청
⑧ 생명공학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과기부
⑨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	산자부
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	재경부
⑪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	재경부, 금감위

구 분	추진부처
1-3.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①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	재경부, 금감위
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	재경부
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⑤ 금융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	금감위
⑥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재경부, 금감위
⑦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	금감위
⑧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재경부
⑨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문화부
②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문화부
③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복지부
④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	복지부
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복지부
⑥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	행자부, 금감위

2.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 인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	전 부처
② 원격의료 제도 도입	복지부
③ 전자의무기록 제도의 도입	복지부
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	복지부
⑤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	복지부
⑥ 출판산업진흥과 도서관 정보화	문화부
⑦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합리화	문화부
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
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	재경부
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자부
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	재경부
2-3.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통부
② 지적전산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행자부
③ 공간정보의 유통·활용범위 확대	건교부

구 분	추진부처
④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건교부, 행자부
⑤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	건교부
⑥ 수치지도 개선	건교부
⑦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 보완	건교부
⑧ 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	건교부
⑨ 건설공사 관련도서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건교부
⑩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건교부

3.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구 분	추진부처
3.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① Cyber교육체제의 구축·운영	교육부
②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개편	교육부
③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경쟁제고 방안	교육부
④ 교과서 발행·공급 규제개혁	교육부
⑤ 학원설립·운영제도 개선	교육부
⑥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부
⑦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	교육부
⑧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교육부
3.2. 새로운 직업장준지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 개혁	
①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	노동부
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	노동부
③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	교육부, 노동부
④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노동부
⑤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	노동부
⑥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⑦ 여성보호제도 개혁	노동부
⑧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⑨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제도 개혁	노동부
⑩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	노동부
⑪ 근로자공급사업관련 규제개혁	노동부

4.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구 분	추진부처
① 우수쇼핑몰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	산자부,정통부
②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 개선	공정위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위
④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정통부
⑤ 민간부문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정통부
⑥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대책	정통부
⑦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정통부
⑧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자율 표시제 추진	정통부, 청보위
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 체제 정비	정통부
⑩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정통부

別冊資料

推進課題別 問題點 및 改善方案

2000. 9.

國 務 調 整 室

< 目 次 >

1. 知識情報化 社會의 基盤造成을 위한 規制改革.....	1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개선.....	3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8
1-3.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19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29
2. 知識과 情報의 活用 및 擴散을 위한 規制改革.....	35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37
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46
2-3. 지식정보의 공유 ·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54
3. 知識情報化社會를 선도할 人的資源의 開發을 위한 規制改革.....	65
3-1.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67
3-2. 새로운 직업 창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76
4. 健全하고 安全한 情報化시스템 構築 · 運營을 위한 制度整備....	89

1. 知識情報化 社會의 基盤造成을 위한 規制改革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제의 개선

①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행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DB화 되어 있는 주민정보, 부동산정보, 자동차정보, 기업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를 개별법에서 각각 서류로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법령이 다수 존재
 - '99.12월 현재 문서형태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법령(예시)
 - 주민등록등 · 초본 : 국적법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지적법 시행규칙 등 16개 법령
 - 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등기법 등 31개 법령
 - 법인등기부등본 : 항공법 시행규칙 등 151개 법령
- ※ '99.12월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증명민원감축 현황보고」에 폐지키로 계획된 사항도 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 서류 제출 규정이 존재
-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민원인이 소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등)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서류제출의 금지를 규정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2001년 상반기)
-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 · 조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제증명 서류제출 금지(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과 연계 · 추진)

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규제정비(행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관련 법령에서 민원신청 등을 문서로 하되 예외적으로 컴퓨터 통신을 허용해 아직도 문서중심으로 운용
- 또한, 민원사무처리관련 법령에서는 정보통신이용 방법을 “컴퓨터 통신”으로 표기하고 있어 적용범위 모호
 - “컴퓨터 통신”은 일반적으로 PC통신으로 이해되어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통신수단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 소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각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는 예외적이 아닌 문서와 동등하게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민원신청방법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의 “컴퓨터 통신”을 “정보통신망”으로 개정하고 법령에 정의를 규정
 - 전자관인의 사용근거를 규정
- * 관련법규 정비(2001년 상반기)

③ 정보통신망 이용민원의 신분확인관련 규제개선(행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등 상당수 민원은 민원신청 대상자로 “본인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민원은 처리 불가
 - 현행 법령상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요구시 민원인으로 보지 않음.
- 민원신청시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 사용근거 미흡
- 민원인의 전자우편 ID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과 통지 곤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인증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여 신원확인 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장이 전자민원 처리대상 민원의 종류를 공표
- 민원결과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관련 법규 정비(2001년 상반기)

④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재경부, 조달청)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은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입찰공고 표시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우편제출 허용
 - 전자입찰은 보안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미허용
- ※ 시행령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개찰), 회계예규 제10조(공사입찰 유의서), 제9조(물품구매입찰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등
- 이로 인해, 많은 조달업체들이 직접입찰 참여 및 내역서, 규격서 등 첨부서류제출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낭비
 - ※ '99입찰참가자 : 내자 16,747명, 외자 13,911명, 시설 313,845명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고 조달비용 절감 및 정부입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입찰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도입
 - 전자입찰대상 : 500만SDR(78억 원)미만의 공사, 13만SDR(2억 원)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
 - 국제입찰은 보안성 확보, 정보화 기술수준 등을 감안, 추후 검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정(재경부, 2000년 하반기)
- 온라인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조달청, 2000년 하반기)
 - 사무실에서 인터넷 실시간 입찰조회 및 응찰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입찰뿐만 아니라 상시입찰, 우편입찰 및 직접입찰 등 모든 응찰이 가능토록 하여 전자입찰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 공공기관의 다양한 입찰방식을 수용,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개발

⑤ 자동차 민원행정 간소화 (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간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관청을 방문,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함에 따라 시간·경제적 부담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시 유관기관의 전산망을 상호연계하여 관련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구비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
 - 전자파일 대체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세완납증명,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제작증 등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2001년 하반기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① 표준화시스템의 재정비 (산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각 부처간 표준제도 운영체제가 상이하여 국제표준정보를 신속하게 흡수, 보급·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 전략을 수립,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상호 연계성 및 표준화 확보에 장애
 - 19개 부처의 표준제도간 연계가 거의 없고, 동일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의 기본이 되는 용어, 단위 및 표준의 서식체계가 달라 국제표준과도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표준화 전문담당기구의 신설 또는 기존 기구(예, 기술표준원)의 확대 개편, 국가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표준화그룹(정부, 표준화기구, 업계)간 표준화시스템 구축, 국제표준 기구에 상응하는 표준체계 등을 정비
 - ISO, IEC, ITU 등 각종 국제표준화기구에 카운터파트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공식기구뿐만 아니라 특정기술과 관련된 수많은 비공식 표준화기구 및 컨소시엄 등에도 대응되는 기관을 지정하여 공식기구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2001년중)

② 단체표준의 활성화 (산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에 의한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보다는 기업중심의 기술별 표준화그룹 및 단체들이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단체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산업내 혹은 산업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화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수많은 표준화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는 이러한 모든 표준화 활동에 관여가 불가능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특정기술별 자발적인 표준화관련 단체결성을 자유롭게 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표준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2001년중)
 - 정부와 업계, 표준화기구간의 역할 체계 정립
 - 소비자보호, 보건 환경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정부가, 사실상 표준화와 같은 상업적, 전략적 특성이 강한 분야는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비
-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2001년중)

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산자부, 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은 제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으며,
 - 국가표준기본법에 제시된 다양한 표준들의 정의는 대부분 물질적, 양적, 기술적 표준에 국한되어 있고(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정의)
 - 산업표준화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표준화'도 광공업품의 하드웨어적 표준과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일부활동(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산업표준화법 제2조 정의)
-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적 표준체계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서비스 부문의 표준화 업무가 범정부적 표준화작업에 추가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 2001년 하반기
 -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공정 측면의 표준화를 포함시키되 발전된 외국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각 부문별(의료, 금융, 유통, 건설, 문화관광, 교육 등)로 표준화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특허청)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인이 산업재산권을 등록 또는 심판을 청구할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가중
- 인터넷 시스템상의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민원처리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민원인이 직접관련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ON-LINE, ONE-STOP방식으로 처리하고
 - 특허넷 시스템의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출원인 코드 즉시 부여 (2001년 상반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외국관련기관과의 특허망 구축이 완성된 시점에는 각종 증명서류의 요구를 폐지
 - 온라인 심판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청구인이 전산망을 통한 전자 문서형태로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 등록시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타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관련정보를 즉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감축
- ※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외국관련기관과의 특허망 구축완료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

⑤ 신기술개발 진흥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특허청)

□ 현황 및 문제점

- 신규성상실의 예외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등 정보전달수단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정보전달수단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시점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발명으로 볼 필요성이 대두
- 반도체 배치 설계의 등록대상에 SOFT TYPE(상위 설계)를 제외한 HARD TYPE만을 규정하고 있어 배치설계권의 실질적 보호 미흡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게 특허출원시점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발명(신규성 상실 예외대상)에 포함시켜 발명의 공개를 보다 자유롭게 함
- 신규성상실 예외대상, 반도체배치 설계권의 보호범위 확대

※ 특허법 개정(2000년 하반기)

- 도면 또는 사진으로 표시된 반도체 배치설계 뿐만 아니라 상위 개념의 설계(SOFT TYPE)에 대해서도 등록가능하도록 배치설계의 보호를 강화

※ 2001년중 배치설계 강화여부 및 추진방안 확정

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통계청)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는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사업체명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입수
 - 그러나, 조사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체의 누락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통계조사에 대한 응답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
 -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상기 조사의 정확도 개선도 기대하기 곤란
- 통계법 제16조에서는 비밀보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통계자료의 제공범위 및 한계에 관한 논란이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므로써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
- 통계자료 제공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자료 제공 요구시 청구자와의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이용활성화를 촉진(2001년중 통계법 개정)

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특허청)

□ 현황 및 문제점

-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은 기존의 상표와는 무관하게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도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등록자와 상표권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기의 웹페이지에서 타인의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등 인터넷의 출현으로 상표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증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도메인 네임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표지사용행위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희석화하는 경우에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도록 함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000년 하반기)
- 인터넷상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실제공간의 일반적인 상표사용으로 보아 상표권의 성립, 유지, 침해여부를 인정하도록 함
※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에서 논의 중인 관련 국제규범의 마련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⑧ 생명공학 관련법령 정비 (복지부, 과기부)

□ 현황과 문제점

- 생명과학 기술발달은 인간에게 긍정적 · 부정적 측면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장치 미흡
 - '83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과기부소관)이 있으나 초기단계의 기술 육성 수준이며, 생명공학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선진각국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1990년 제정된 "사람의 수정과 배아연구에 관한 법률", 독일은 1990년 "배아보존법", 프랑스는 1994년 "생명윤리법"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생명의 존엄성 및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기초위에 생명(인간) 복제 및 배아관리, 유전자치료, 유전자재조합실험 등을 관리할 법령을 제정하여 안전 · 윤리기준 제시(2001년)
 -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체유해성 관리에 중점을 둔 가칭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기본법'을 제정 추진
 - 과기부는 인간복제 등의 윤리성에 중점을 두고 생명공학 연구개발 관련법령 제정을 검토
- ⇒ 보건복지부, 과기부등 관련부처가 협의하여 생명공학관련법령을 조속 제정 · 시행

⑨ 외국인투자제도 규제개혁 (산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화되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권, 생명공학기술권 등 신지식재산권에 명시적 규정 결여
- 고도기술사업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은 『외국인투 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별표에서 사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436개) 및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
-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 현재, 신고업무는 「수탁기관장의 업무처리준칙」을 통해 산업자 원부장관이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에게 업무를 위임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지식자본에 대하여도 출자목적물로 인정 (2001년)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조세감면대상업종의 지정 시스템의 개선
 - 정기적으로(1년마다) 조세감면대상업종의 개정 추진 (2000년 하반기)
 - 인터넷 공간(Cyber KISC: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투자신고를 가능케 함
 - 'Cyber 공간에서의 신고 방안' 용역의뢰 및 검토(2000 하반기)
 - 예산반영 및 시스템 구축(2001 상반기)
- ※ 외촉법 시행규칙 및 수탁기관업무처리준칙의 개정(2001년 중)

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금년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코스닥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로 인해 벤처기업 상호간 또는 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업무 제휴나 M&A를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러한 현상이 기술력과 사업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에까지 장기간 파급될 경우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잡은 벤처 산업의 쇠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2001년 상반기)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기술집약형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⑪ 코스닥시장 운영관리체제 개선 (재경부, 금감위)

□ 현황 및 문제점

- 코스닥시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제·개정, 협회등록(취소)의 승인, 코스닥시장의 주가감시, 매매심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협회회원에 대한 감리업무 등 제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증권업협회의 내부조직이라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 운영의 독립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 협회의 회원이 증권거래소 회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에 따라 코스닥 시장과 증권거래소와의 실질적인 경쟁체제 구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코스닥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이익단체인 증권업협회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유효적절한 제재가 곤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코스닥위원회에 대한 증권업협회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소와의 경쟁을 촉진시킴과 아울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 증권거래법등 관련 법령 또는 증권업협회 정관등 개정(2001년 상반기)

1-3.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①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 (재경부, 금감위)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은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행 은행법규를 준용
 - 현행 은행법규는 off-line 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것으로서 고객관리, 내부조직운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터넷뱅킹 영업에 적합치 않은 요소가 많음
 - 인터넷은행은 고객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 결제, 투자상담, 대출 등 은행업무를 처리하므로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능력과 정보기술력이 영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 무점포로 운영되며 인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자본금 요건(1,000억원) 등 진입기준과 은행의 자회사 설립규제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인터넷은행 진입기준을 완화(2001년중)
 - 자본금 요건을 최소한으로 규정

※ 은행법 제9조 개정
- 기존 은행이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2001년중)

※ 은행법 제37조 제1항 또는 은행감독규정 제48조 개정

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금감위에 신고(증권) 또는 허가(보험)를 받아야 함
 - * 은행 : 채무보증업무 등 16개, 증권 : 주식평가 등 13개, 보험 : 보험수리 등 11개 업무
-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채무보증 등 16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영업가능여부 결정을 재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재경부고시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고유업무외의 타 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의 겸영인가등을 받아야 함
- 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에 대하여는 환매수기간 및 환매수이율을 제한하고 있음(환매조건부채권매매규정)
 - 동 업무가 실질적으로 예금수신업무와 유사함에도 은행에 대해 불공평한 규제로서, 은행의 동 업무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금융업별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영위 제한 및 금융업종간 형평에 반하는 규제는 금융의 겸업화추세에 능동적 대응하기 곤란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2001년 상반기)
 - 금융업의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보안기술,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프로세싱 등 업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진출 허용
 - 증권 및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여 · 판매 업무는 기 허용
 -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영업 허용 등
-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지침,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
- 인가 등을 요하는 부수업무의 범위 최소화(2001년 상반기)
 -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는 허가 등을 면제
- ※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
- 은행의 환매채 매매업무 활성화를 위해 환매수기간 및 이율 제한을 완화(2000년 하반기)
 - 은행 · 증권업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겸업화의 수준을 감안하되, 불합리한 차별소지를 제거
 - 환매수기간 및 이율 제한 폐지(2001년중)
- 겸영업무의 확대 추진
 -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겸영업무의 확대방안을 검토 · 추진

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선물거래법에서는 일임매매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나(선물거래법 제48조 2항)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되고 있는 증권회사와 형평에 어긋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어긋남
- ※ 선진국에서는 일임매매조건에 대해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으면 허용
- 특히 국내 선물업계에는 선진국 선물시장에서와 같은 선물거래 자문사(Commodity trading advisor : CTA)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일임매매수요를 충족시킬 기회가 없음
- 다만, 시장개설 초기인 현 시점에서 일임매매를 전면 허용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없지 아니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문유형을 다양화(2001년 상반기)
 -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이외에 가격 역지정주문 등 새로운 주문 유형을 도입
- ※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증권거래소 선물옵션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 일임매매의 제한적(증권거래법과 유사한 수준) 허용(2001년 하반기)
- ※ 선물거래법 개정

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진입기준을 설정한 결과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자본금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그 결과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업이 소수의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결과를 초래
 - 증권, 투신, 할부금융, 신용카드업 등에서 30대 재벌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음
 -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외형위주의 경영풍토를 조장하는 등 그릇된 경영관행을 유발
- 대형화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크게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높은 퇴출장벽으로 작용
- 또한, 금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결과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의 산물인 퇴출인력(5만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재활용 기회가 제약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설립자본금 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전문가가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2001년 상반기)
 - 투자자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보증금 예치제와 고객보호 기금 적립제의 확대시행 · 도입 등으로 보완

⑤ 금융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금감위)

□ 현황 및 문제점

- 증권거래법을 제외한 금융관계법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 보고서 등의 서류에 대해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의 미제정으로 인해 각종 보고(신고)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이 제약되고 있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문서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종이서류의 생산, 제출, 보관에 드는 비용도 상당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가능한 각종 허가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2000년 하반기)
 - 금감위 고시 제정

⑥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재경부, 금감위)

□ 현황 및 문제점

- 은행이 공고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은행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2항 및 제47조제2항)
 - 서명·날인의 의무화는 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나, 문서전자화의 장애요인이 됨
- 은행의 수표, 어음 등 타점권을 마이크로필름에 촬영, 보관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7조 제2항)
 -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촬영, 보관은 공해유발, 인력낭비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전산 이미징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음

□ 개선 방안 및 추진일정

- 은행 재무제표의 서명·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
 - 은행이 공고하는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는 대부분 전산에 의해 출력되므로 서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은행법 제41, 42, 47조 개정(2001년 상반기)
- 타점권 보관방법 개선
 -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 보관하는 방법 외에 전산 이미징시스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000년 하반기)

⑦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금감위)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신탁사의 경우 단위형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성과급 보수가 허용되고 있으나 추가형 투자신탁과 채권형에 대해서는 성과급 보수 불허(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49조 2항)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성과보수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허
- 투자신탁등 자산운용업을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관건인 바, 점진적인 성과보수제의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제도의 토양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뮤추얼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성과급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신탁과의 형평성을 제고(2001년 상반기)
 -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
- 추가형 투자신탁 및 채권형에 대한 성과보수제 확대실시(2001년 상반기)
 - 사모펀드 및 기관투자가대상 펀드에 대해 우선 확대하고 추후 추가 확대여부 검토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⑧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채권시장은 기업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급격히 위축되어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회사채 발행규모 : '98년 56.0조원 → '99년 30.7조원 → 2000.1~6월 26.9조원
- 채권시장의 위축은 '99년 하반기 투신사 환매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나, 채권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영향받은 바가 적지 아니함
-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그동안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 및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채권전문딜러의 육성과 국채전용펀드의 허용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채권시장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2000년 하반기)
 - 신용평가업의 진입기준, 영위업무의 범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제를 정비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증권거래법 개정
- 장외채권거래정보의 실시간 공시체제 구축(2000년 하반기)
 - 증권회사가 장외채권매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통보하고, 증권업협회는 이를 증권전산 단말기 등을 통해 즉시 공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개선

⑨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투자자문사는 상근 임원 중 1인 이상 및 상근 직원 중 2인 이상, 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근 임원중 1인 이상 및 직원중 4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41조의7)
 - * 증권관계기관에서 운용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증권사나 투신사 전체 직원 중 본점 운용부서 직원은 5% 수준에 불과) 또는 운용전문인력시험 합격자
- 투자자문업이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해 조언하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운용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함
- 투자자문사는 금융업 중 금융전문가가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나 운용인력 자격 요건이 과중하여 회사 운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
 - 과다한 투자자문사 운영경비는 투자자 부담으로 귀결
 -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으로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불법 행위를 유발하고 있음(규제준수율 저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운용인력 자격요건의 완화(2001년 상반기)
 - 증권사 등 증권관계기관에서 기업분석, Research 업무를 담당하는 등 투자조언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문화부)

□ 현황 및 문제점

- 영상물의 제작, 유통, 수입, 등급분류 등과 관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다수의 규제가 상존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제약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자와 유통관련업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
 - 비디오물, 게임물 제작, 수입·반입할 경우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수입추천 또는 반입추천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영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영화 및 음반·비디오·게임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2000년 하반기)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 및 유통관련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2000년 하반기)
 - 제한상영등급과 제한상영관을 도입 등

②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문광부)

□ 현황 및 문제점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 따라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2000년 하반기)
 - *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
 -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시 예상되는 부작용(방송광고요금 폭등, 방송광고거래질서 문란, 방송의 상업성 심화)을 최소화
 - 민영미디어렙의 지분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분참여 범위 설정
 - 방송사 등 특정세력에 의한 미디어렙 지배 견제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거래질서 문란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

③ 건강보험 EDI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EDI는 '97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여 2000년 현재 전체 청구물량의 50%정도가 EDI로 청구되고 있음
- 진료비 EDI 청구에 대하여 조기지급, 실사유예 등의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
 - ※ 미국은 EDI에 의한 보험청구시 13일이내에 환급해주고 서면청구시는 27일이후에 환급해주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EDI의 경우 지급 소요기간이 2일이내, 서면인 경우 일주일로 차별화하여 지급함
 - ※ 싱가폴의 경우 EDI청구를 의무규정(Medi-net)으로 두고 있음
- 진료비 청구·심사기간의 단축 및 건강보험 관리비용절감, 그리고 의료부문 정보화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EDI청구와 서면등 타청구와의 지급(환급) 기간을 차별화하여 법령에 명시(2000년 하반기)
 - 의료기관과 약국의 EDI 청구·심사 유도
 - 진료비 청구·심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요양기관 자금회전율 향상 및 건강보험 관리비용절감, 의료부문 정보화 촉진등을 지원
- 예) EDI청구방법 : 15일 이내, 타청구방법 : 30일 이후

④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동거 가족당 1개의 보험증만 제공함으로써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요양기관 방문기록을 모두 하나의 보험증에 기록함으로써 잊은 보험증 교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
- 요양기관과 공단의 전산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일이내에 의료보험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7일이내에 의료보험증 미제출시가입자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별 건강보험증 발급(2000. 7월부터 기시행)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하여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자격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2001년 하반기)

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투명한 납세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4항에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필요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청은 99년 3월, 병원을 신용카드 가맹대상으로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보내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 통지후 가맹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 대다수 신용카드 수납병원이 특정과목과 사용 카드종류등을 제한하여 취급금액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응급의료지정병원조차 신용카드를 전혀 받지않는 병원이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여전함

※ '99.6.21~7.10간 서울소재 30병상이상의 병원 160개를 대상으로 시민중계실(YMCA) 모니터가 전화 및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병원의 신용카드 수납실태를 조사한 결과 65.6%만 신용카드에 가맹

	신용카드 받는 병원	신용카드 안받는 병원	계
100병상 이상 병원	54 (72.0)	21(28.0)	75
30~100병상 미만 병원	51 (60.0)	34(40.0)	85
계	105(65.6)	55(34.4)	160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의료기관과 약국병원 및 의원에서의 신용카드 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발굴(2001년)
 - 예) 수수료인하, 세금감면 혜택부여 방안등 다각적 대책 강구

⑥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행자부, 금감위)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건축물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손실심각
 - 99년의 경우 3만3천여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370명의 인명피해 및 1,600여억원의 재산피해 초래
 - 건축물의 대형·고충화와 복합화에 따라 화재발생 및 피해정도 심화
 - *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6.8%, 재산 피해는 13.8% 증가
- 화재보험과 소방제도간 연계 미흡으로 화재보험가입자에 대한 점검이 소방관서와 화재보험협회에서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등 보험가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
 - 화재보험가입이 저조하고, 보험가입을 통한 자체안전대책 부족
 - 대형사고 피해자는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조하여 무리한 보상요구
- 보험사의 전근대적 영업관행, 산술적·회일적 모형적용으로 과다한 이익발생 및 시설주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미흡
 - 안전관리가 우수한 무사고 시설에 대하여 보험료 차등화 혜택이 부족하여 소유자·관리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 유도효과 제약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보험가입자에 대한 소방점검 개선 (2001년 상반기)
- 합리적인 요율결정, 안전등급 평정에 의한 보험료 차등확대, 안전 관리가 우수한 무사고시설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 실시 등 안전관련 보험제도 대폭 개편 (2001년 상반기)

2. 知識과 情報의 活用 및 擴散을 위한 規制改革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 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인 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 (전 부처)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각종 사업의 인·허가, 특히,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사무소 요건, 상시 고용인 수, 시설요건,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함.
- 또한 각종 법령이 출석요건 등 전통적인 장소개념 위주로 인허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사무소 요건, 상시고용인 수, 시설요건, 자본금요건, 출석요건 등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
- 전부처가 소관 법령전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2001년)

② 원격의료제도 도입(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제18조제1항)은 의료행위를 의사의 직접 진료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화상진료 및 전화상담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관련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원격의료 실시 후 그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이나 귀책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 **의료법 제18조 제1항** :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 미국은 60년대부터, 카나다는 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는 97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수행중이며, 일본에서는 건강보험법에서 전화 또는 텔레비전 화상 등을 통한 재진에서는 기본진료료 즉, 재진료를 인정하여 불필요한 재진 방문을 줄여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원격의료는 「영상을 포함하는 환자정보의 전송에 기초를 두어 원격지에서 진단, 지시 등의 의료행위 및 의료에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오·벽지진료등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원격의료로는 ①의료기관간 또는 의사상호간 의견교환 ②의료 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관련 기관간의 원격의료 ③의료기관과 가정간 원격의료 ④의사 외의 보건의료인과 가정간 원격의료 ⑤원격의료에 관련한 화상회의가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원격의료 허용을 위하여 의료법령 정비(2001년 하반기)
 - 원격의료 행위의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과 처벌사항 등 부당한 의료행위의 처벌규정 마련
- 원격의료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2001년 하반기)
 - 우선 의료기관간 또는 의사상호간 의견교환 및 의료기관과 의사가 없는 의료관련 기관간의 원격진료 등 Telemedicine을 인정
 - 그 다음 의료기관과 가정간 원격진료 및 의사외의 보건의료인과 가정간에 발생하는 행위인 Tele-care를 의료행위로 인정
- 원격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대상으로 지정(2001년 하반기)
 -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의료인과 환자의 금전적·비금전적 비용부담을 경감

※ 사이버병원 및 사이버약국제도 도입여부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

③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진료기록부와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외의 전자진료기록은 임의수정, 변조 가능성때문에 의무기록으로서 법적효력이 제한
- * **의료법 제21조**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 ※ 일본후생성은 1999.4.11부터 진료기록카드가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 기간 내에 복원가능한 형태로 보존할 것 등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인정
- ※ 미국 보건부도 금년 10월 전자서명법이 발효에 맞추어 연말까지 전자 의무기록의 개인 비밀보호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예정
- 현행 종이의무기록은 효율성과 안전성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음
 - 노령화, 만성병환자 증가, 새로운 검사·진단법등의 증가에 따른 의무기록의 폭증으로 인한 작성, 보관, 전달 및 관리비용이 증가
 - 비체계적인 의무기록 작성으로 인한 기록검색, 파악 및 분석비용 증가로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활용하고 이를 진료에 활용시키는 등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제약
 - 의무기록이 의료기관에서 분실되거나 종이의무기록을 위·변조하는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민·형사소송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의료법령을 정비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의무기록 형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 및 전자의무기록을 인정(2001년 하반기)
- 전자의무기록의 위·변조 방지등 관리대책 마련(2001년 하반기)
 - 전자진료기록을 표준화하여 전자기록의 수정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 이미 저장된 전자진료기록에 대한 삭제·첨가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고, 변경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준을 제시
 - 이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전자의무기록 관리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공인하여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탁하도록 허용

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시 전자처방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복지부는 인터넷 처방전은 위조나 해킹의 가능성과 의료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종이처방전 2매 발행)
-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게 종이처방전을 2매를 발행하면 환자는 이를 소지하고 약국을 전전하여야 하며,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후 EDI청구를 위해 전산입력하여 약제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 의사는 진료기록 입력과 동시에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은 전송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미리 조제하여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불편을 경감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된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을 대체 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및 건강보험법령 등 보완(2000년 하반기)
 -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개정하여 전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서명된 전자처방전 교부시 종이처방전은 1부만 교부 할 것을 명시 (전자처방전 표준서식 등 필요 내역을 고시)
 -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사용하는 경우, 종이처방전의 수가와 동일한 수가를 인정하도록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⑤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복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법령들은 인터넷시대의 인터넷 상담·전자처방전·전자정보저장·원격진료나 재택진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욕구대응에 미흡
- 현재 보건·의료정보화의 부진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추가적인 관리비용 부담이 발생
※ 미국은 의원급 클리닉의 경우 EDI를 비롯 임상진료(원격진료 포함)를 웹 방식의 의료전산화시 의·약사 1인당 연간 1만달러 절약
- 또한, 병원마다 독자적인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코드 및 서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간 정보교환도 어려운 상태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01년)
 - 의료정보 전송표준, 용어 및 코드화 등 표준화
 - 전자의무기록 인증체계 구축
 - 의료기관 정보화 촉진
 - 진료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개발 등
- 필요시 보건의료정보화기본법 제정

⑥ 출판산업 진흥 및 도서관 정보화(문광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출판관련 법령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 납본 등 절차와 규제위주로 되어있어 출판(서점) 및 인쇄산업을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이 되는 컨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한계
- 종이책 중심의 빈약한 자료제공과 단순 공부방 역할에 그치고 있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이용시스템과 환경을 정보화하여 도서관이 다양한 디지털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현행 규제·절차 위주의 출판관련 법령을 대체하는 가칭 '출판 진흥법'을 제정(2000년 하반기)
 - 출판사·인쇄소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선
- 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정보화 추진(2000~2002년)
 -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에 디지털자료실 조성
 - 공공·대학·전문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공동목록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등 디지털 자료의 공유 활용 제고
 - 전국 도서관 소장자료, 목차 및 주요자료 원문 DB구축, 민간구축 전자책 등 디지털 자료의 구입 등 도서관의 디지털자료 확충
 -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를 양성

⑦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합리화(문광부)

□ 현황 및 문제점

-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환경하에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의 보호를 필요성이 증대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 증대
 - 현행 저작권 제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규는 엄격한 반면, 저작물 이용 정보제공 등 유통창구가 미비하여 우수한 저작물들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어문, 미술,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을 이용한 컨텐츠산업 성장도 지연
- ※ 컨텐츠는 컨텐츠 보유기관에서, 저작권관리정보는 저작권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송권」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2000년 하반기)
-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001년 하반기)
 -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저작물 전송을 합법적으로 허용
 - 저작권 등록 공보 발행 및 온라인 제공으로 저작물 이용환경을 개선
 - 저작권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분산형 저작권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작권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 온라인 저작권 등록시스템을 개발하여 등록과정을 자동화하고 지방거주 신청인의 저작권 등록관련 불편 개선

2-2.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

(전자문서 사용의 활성화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의 제정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이용환경 및 기본적인 제도는 뒷받침되어 있으나, 현재 전자문서의 이용은 개별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개별법령상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는 상품인도서, 용역제공서를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 초래
- 아울러 본인확인 및 서명날인 등을 대신할 전자서명체계 및 정보화환경구현도 부족하여 전자서명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상품인도서 및 용역제공서 등의 송부방법을 소비자의 동의등 일정한 요건하에 전자문서화 허용(2000년 하반기 : 공정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통신판매 규제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허위 · 과장광고에 관한 규제의 혼선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도 규제대상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을 초래
- ※ 허위고장광고의 금지의무 위반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상이하게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 · 도지사간의 업무의 혼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권한은 시 · 도지사에게 있으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 발생 가능

○ 통신판매시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 제도의 도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의 경우 10일 이내, 다단계 판매의 경우 20일 이내의 무조건적 청약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음
-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청약의 철회만을 인정하고 있음
 - 동법 제20조 1항에서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등 통신판매의 경우도 다단계 판매나 방문 판매의 경우와 비슷한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으며, 구매 방식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개선(2001년 상반기 : 공정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정비
-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간의 업무조정(2001년 상반기 : 공정위)
 - 현재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소관 사항을 분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분야를 조정
- 통신판매에 있어 무조건적 청약철회 제도 도입(2001년 상반기 : 공정위)
 - 다만, 농산물 등 짧은 기간동안 부패 내지 손상되기 쉬운 물건에 한해서는 청약철회의 기간을 단기화 또는 적용을 제외

(전자서명제도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서명 사용을 제한하는 명시적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법령이나 제도가 기존의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업무방식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부적합
 - 즉, 기존의 업무처리절차나 관행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인증서 이용필요성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전자서명이용을 확산시키는데 한계
- 따라서 직접대면하여 종이문서로 처리하는 기존업무처리절차와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마련 시급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민원행정, 의료, 공공계약등 주요분야에서 전자서명 이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정추진(2001년 상반기 : 공정위, 법무부, 정통부)
 - 약관 게시·교부 및 설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상법의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수용 필요
 - 기타 신원확인을 필요로하는 경우 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 수용 필요

- 전자서명 의무화, 전자서명이용시 수수료 감액등 전자서명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마련(2001년 상반기 : 정통부)
 - 주민등록증외에 인증서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
 - EDI방식을 이용한 정보교환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음을 규정
 - 공공성 및 보안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는 방안등
 - 조달EDI의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수수료 감액제도 시행

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재경부)

□ 규제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월 몬덱스코리아가 몬덱스카드를, 7월에는 국내은행 및 신용 카드사가 공동으로 K-CASH를 발행하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유통중
 - K-CASH의 경우 2000년 하반기중 버스, 지하철 등 교통분야에 교통카드와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네트워크(온라인)화도 추진하여 2001년 1/4분기부터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도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
- ※ 기타 일종의 전자상품권 성격을 가진 Cyberpass(데이콤), I-cash(아이 캐시), E-coin(이코인) 등 30여종의 소액결제수단(통칭 : 전자화폐)이 전자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중
- 전자금융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이 우려 되나, 현재 이를 규제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리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 특히, 비금융기관 발행 전자상품권의 경우 사업자승인규정이나 소비자보호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전자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폐업하거나 고의로 시스템을 철거할 경우 고객의 피해가 우려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자화폐 발행자격, 전산장애 발생시 금융기관의 책임범위, 이용자 보호방안, 고객정보의 보호방안, 위·변조 및 부정사용시 손실부담 등 전자화폐의 이용도 제고 및 전자자금 이체서비스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전자화폐 및 금융권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2000년 하반기)

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산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등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거래 관련자의 책임관계가 불분명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자거래 관련자의 책임관계 명확화(2001년 하반기)
 - 소비자, 사이버몰 운영자, 사이버몰 입점업체, 배송회사, 카드회사, 배송업자 등의 책임범위 명확화
 - 전자상거래 과세범위 명확화 및 재판관할권 근거 규정 마련(2001년 하반기)
 - 전자상거래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분쟁 발생시의 재판관할권 근거 마련
- * 과세범위와 재판관할권 근거를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상 거래에 적용할 별도의 통관규정이 미비하여 관세법상 일반통관 절차를 적용하므로 인해
 - 관련자료의 제출을 위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등 신속한 거래를 생명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확대발전에 어려움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시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을 위해 일반 통관절차를 대폭 생략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관세법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통관절차의 생략 또는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0년 하반기)
-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 마련(2001년 하반기)
 - 밀수 방지, 관세 확보 등 최소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통관절차를 마련

※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은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

2-3.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①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후반 이후 적극적인 정보화촉진시책으로 전반적인 정보화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 연령별 · 계층별 · 지역별 정보이용능력의 편차가 매우 크고, 특히 도 · 농간에는 수요 및 구매력의 차이로 인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인터넷 이용률 현황>

- 연령 : 20대(60.0%), 50대 이상(4.9%)
- 소득 : 월 400만원 이상(53.4%), 월 100만원 미만(24.5%)
- 직업 : 사무직(64.0%), 농어민(7.3%)
- 정보화시대에서의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정보화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능력 지원 및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 제도적 대책 마련(2001년 하반기)
 -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기술개발 및 컨텐츠 육성에 지원강화

② 지적전산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행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전산화작업을 지적공사에서만 독점하고 있어 지적측량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적전산화작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
-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서 지적측량 및 지적도면의 작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5개도 이상에 지사를 두고,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지적공사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독점 허용
-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기존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가 이를 독점하고 있어 사업추진 미흡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측량 및 지적도면 작성 대행자 요건 완화(2000년 하반기)

③ 공간정보의 유통·활용 범위 확대 (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관련법령에서 공간정보의 유통을 제한
 -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자료에 대한 기밀유지를,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촬영·묘사·녹취·측량 금지를 각각 규정
 - 측량법에서는 국립지리원이 수행한 기본측량성과 중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도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GIS구축사업으로 제작된 수치지도 중 일반 수요가 가장 많은 1/1,000 축척의 수치지도와 1/1,000 축척의 수치지도를 기본 도로 활용한 토지특성도 등 각종 주제도 및 항공사진의 일반공개가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없이 제한되고 있어서
 -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등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1/1,000 축척의 수치지도와 이를 기본도로 활용한 각종 주제도 및 항공사진의 일반공개 추진(2000년 하반기)
- 공간정보의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 마련(2001년 하반기)

④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건교부, 행자부)

□ 현황 및 문제점

- 측량은 측량법상의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과 지적법상의 지적측량으로 구분됨
- 측량법에 의한 측량과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은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나,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기술자의 상호 이용 제한 등의 문제점 초래
 - 지적법에 의한 측량은 지적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만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측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지형공간정보·지도제작·도화 또는 항공사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관련법령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 강구(2001년 하반기)

※ 2001년 상반기에 용역실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⑤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 (건교부)

□ 현황과 문제점

- 국립지리원은 공공측량계획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측량성과물에 대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대한측량협회에 업무위탁)
-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심사기준 및 심사비용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의 경직성 때문에 심사기간의 지연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효율적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관련규정의 정비·보완이 필요
- 또한 첨단장비 출현으로 업체마다 특성있는 고유의 측량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 기술발전 방향에 맞도록 유연성있는 심사제도 기준 마련이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공공측량심사업무처리규정 및 심사비용산정기준 재정비(2000년 하반기)
- 심사기간 지연방지를 위한 공정별 중간심사제도의 시범적 도입(2001년 전반기)
- 전문인력 확보 및 심사방법과 과정의 전산시스템 개발 (2001년 하반기)

⑥ 수치지도 개선 관련 제도개선 (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수치지도를 제작하여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급하여 왔으나
 - 2000년 현재까지 수치지도의 수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경된 지형정보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 측량법에서는 수치지형도는 2년마다 1회 이상, 수치주제도는 3년마다 1회이상 주기적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로나 건물등의 지형정보는 상시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2년이나 3년 주기의 갱신으로는 신속·정확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곤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수치지도의 전면적 갱신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
 - 1/1,000 수치지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투자
- 지형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수치지도의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도록 측량법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2001년 상반기)

⑦ ITS 시설의 설치 근거규정 보완(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ITS사업은 기존 교통체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간부문 및 정부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ITS사업 분야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장비가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으나, 도로법상 도로 부속물의 정의에는 기존의 시설·장비들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장비에 대한 설치근거가 미약해지는 경우 발생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ITS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등과 협의하여 도로법령상의 관련 규정 정비(2001년 하반기)

⑧ 공공부문 수집 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ITS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교통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기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
- 공공부문에서 교통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민간업체에 공개 됨으로써 교통정보제공 서비스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 이러한 공공부문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 범위, 대상, 방법 등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민간업체의 교통정보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공공부문이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2001년 하반기)

⑨ 건설공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준공도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으나
 - 공개범위 및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주체들간에 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기존사업의 준공도서 등 관련서류를 발주자가 활용하기 불가능하거나 미흡
- 이 때문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 및 시설물 관리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의 공유 및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건설공사관련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를 명기(2000년 하반기)

⑩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건교부)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물류사업자와 그 거래처 및 물류관련기관간을 연결하는 물류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음
- 물류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중에서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 전담사업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함
- 이에 따라 1999년 12월말 현재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한국통신과 한국물류정보통신의 2개 업체에 불과하여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물류정보화사업이 자연되고 있으며
 - 상호경쟁을 통한 물류정보화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을 저해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6에 규정되어 있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중 납입자본금 규모를 완화하여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민간 물류정보업체도 전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2001년 상반기)

3. 知識情報化 社會를 선도할 人的資源의 開發을 基盤造成을 위한 規制改革

3-1.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① Cyber교육체제의 구축 · 운영(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3월 기존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 “원격(사이버)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성인과 대학수준의 사이버교육 기본시스템은 상당 수준 구축된 상태
 - 원격(사이버)대학, 원격(사이버)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식 · 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
- 한편, 사교육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학원의 경우, 대면(face to face)교육을 전제로 1961년 제정된 법령에 의거 설립 ·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학원의 사이버형태 교습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이버교육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 현실적으로는 『인터넷과외』 등 온라인(on-line)형태의 과외교습 실시중임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기존학원에서 가상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습일수나 교습기간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함(2001년)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습과정)에 추가
(예) “학원에서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가상(사이버)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학원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가상수업도 학점인정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 근거규정 마련(2001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②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편(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교육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 등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계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
- 지식기반사회와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영어학습능력의 증진 및 선진국가의 학문과 기술 습득을 위한 외국문화 이해기회 확대 등 관련 규제의 개혁이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기초 능력, 언어 및 정보 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심 등 지식기반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적극 도입(2000년 하반기)
 - 교육정보화 진전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사이버 경제·문화를 포함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과별 정보화관련 교육과정 마련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 학습능력의 신장
 - 조기유학 규제 완화(2000년 하반기)
- 교육관련 자료의 디지털화
 -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발·보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산출물(연구물, 창작물 등)을 생산할 때, 인쇄매체와 병행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도록 제도화

③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경쟁 제고 방안(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 평균인 양성에 치중한 교육정책, 자율보다는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을 적용해 온 결과, 타율적·관행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는 한편, 사학의 경우도 학교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등에서 공립학교와 차별성이 없이 운영
- 외국인 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학력이 인정되지 못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도 금지되고 있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 상실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외국인학교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학력을 인정토록 하며, 내국인 (대학특례 입학대상자)학생 입학을 허용(2001년 상반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생 선발 및 수업료 결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허용(2001년 하반기)
-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개발하고 국·공·사립대학의 부속학교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검토(2001년)
- 학교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이 아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학교장 책임 경영을 확산(2000년 하반기)

④ 교과서 발행 · 공급 규제개혁 (교육부)

(1종 도서 발행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장관은 인쇄 · 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종 도서의 발행권을 부여
 - * 현재는 특정 출판사가 독점 발행함으로써 여타 출판사 참여 배제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교육부장관이 스스로 저작권을 가지는 1종도서 제도를 유지하는 한 그의 발행권을 발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특정 출판사(대한교과서)에게 독점적으로 발행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경쟁을 통한 발행 제도로 전환 (2001년)
 - ※ 다만, 국정교과서(주) 민영화시("98. 12. 26.) 인수기업인 대한교과서(주)와 약정한 대로 3년간(2001학년도까지)은 현행 유지 불가피
-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에서 인쇄 · 제본시설 · 편집인력 및 재무 상태의 건전성 등 공모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출판사 중 엄정하게 심사하여 적격자를 발행자로 선정
- 발행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교과서 품질 저하 및 생산 · 공급의 불안정 극복을 위해 상당 기간(교육과정 개편시까지 5~6년) 계속 발행권을 부여

(교과용도서 공급)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급 대행자로 지정
 - * 현재는 대한교과서(주)를 독점적 공급 대행자로 지정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교과서의 안정적 · 적기 공급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과서 발행사의 자율공급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공급의 애로점을 해소하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2001년)
- 자율 공급 방안 검토
 - 발행사별 자율 공급 방안, 발행사 자율 공동 공급 방안, 교과서 공급을 Outsourcing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⑤ 학원 설립 · 운영 제도 개선(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학원을 설립 · 운영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법정화, 시설기준의 지역별 격차 및 기준 과다, 강사 자격의 법정화, 타 교육시설에 대비한 별칙 조항의 과중 등의 문제 초래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과외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입법화
 - 학원법에서는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원에 관한 규제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 평생교육법에서는 성인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에 관한 규제를 정하는 것으로 양법률간 규제대상 · 범위를 정함
 - 성인대상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 입시준비대상 관련 규제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합리화할 것은 합리화
- ※ 시설기준, 강사자격, 설립절차, 별칙조항, 교육과정 제한규제 등 정비 (2001년)

⑥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의 창의적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대학본래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아울러 대학정책의 일관성 대학행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이 제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학과간, 학문계열간 협력이 가능토록 관련규제를 정비 함으로써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문적 협력을 통한 학문연구의 효율성을 제고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대학 운영시 적용되는 규제와 법적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운영의 융통성을 부여(2001년 하반기)
- 대학간 통합·연계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설립 및 폐교관련 규제를 완화
- 외국대학들의 국내 대학 진입을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치를 확대(2001년 하반기)
- 대학수학을 위한 기초능력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중점 반영하는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실시(2001년)
-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완전 자율화를 허용하여 대학이 증원규모를 포함한 모집단위(학과·학부) 신·증설을 자율결정(2001년)
-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공립대학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입학정원은 교육부가 결정하되, 모집단위별 정원은 대학이 자율결정(2001년)
- 정원 자율화 전면실시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강화방안 마련(2001년)

⑦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적 소수의 조기발굴과 이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서 영재교육법을 개정(2000년 하반기)
 - 초·중등학교 운영상의 특례적용 학교로 영재학교를 운영하되 상급의 영재학교에서 하급학교과정의 영재교육을 담당토록 개선
- 학생들이 능력 수준과 학습스타일, 관심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제, 반편성·운영 및 조기진급,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제를 개선(2001년 하반기)
- 영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학교나 해당학교의 교원이 인정·채택·개발한 도서 또는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2001년 하반기)
-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임용, 방법을 개선하고, 영재교육담당 교사들에 대한 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 마련(2001년)

⑧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정보화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정보소양 증진 및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사업무 및 교육행정업무정보화를 교육정보화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CIO 제도를 도입(2001년)
- 교사들의 정보소양증진을 위한 교원연수비 지불보증제 실시, 원격교원연수를 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설립근거의 마련, 연수대상 범위의 규정, 학점위주운영의 규정(이상 추진중), 원격교원연수에 소요되는 통신료를 지원(2001년)
- 교육정보화의 기반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정보화설비의 포함,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활용, 정보화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확대,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설비에 정보화관련 기자재·자료 등의 포함, 교육관련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대상에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 (2001년)
- 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에 시간제·통신제 등의 다양한 방식 도입, 특수교육에 원격교육체계 도입 (2001년)
- 교육정보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어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을 교육관련기관 소속 구성원이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관련기관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상금 지급 면제 등 저작권 적용예외사항을 규정(2001년)
- 교사들의 정보소양증진을 위하여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컴퓨터 실기과목의 포함, 교원임용시험과목에 정보통신관련 과목의 포함, 교원임용 및 승진시 정보화관련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전부여(2001년)

3-2. 새로운 직업창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①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훈련관련 법률이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으로 분산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이 여러단계 하위규정에 걸쳐 규정되어 있어 훈련기관이나 수요자는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노동부장관은 매년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상기관을 4개부문(공공, 대학, 학원,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자별로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평가절차등이 서로 달라 평가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정보의 효용도 저하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훈련기관 내지 과정일반에 대하여 훈련수요자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의 내용과 공개행태에 미치지 못함
- 훈련재원 전달체계의 설계, 훈련비 지원기준의 설정 및 집행기능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고용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담는 내용의 항목을 민간자율훈련시장(즉, 자비훈련시장)에 대한규율과 정부 지원 훈련시장에 대한 규율로 이원화 하여 규정(2001년 상반기)

- 정부차원의 평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육훈련수요자가 용이하게 접근가능하도록 함. (관보에 고시, 우수과정 지정 유효 기간중 work-net의 훈련과정 검색창에서 상시검색 가능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 취업을 중심으로 훈련성과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를 직무능력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이를 훈련과정에 연계하여 훈련성과지표로서 자격취득율의 비중을 점차 높여감

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응시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

◆ 기술계열

- 기술사(기능장) : 대졸+실무7년, 전문대졸+실무9년, 기사+실무4년, 실무11년
- 기 사 : 대졸, 전문대졸+실무2년, 산업기사+실무1년, 실무4년
- 산업기사 : 전문대졸, 실무2년
- 기 능 사 : 응시자격 제한없음

◆ 사무계열

- 각종 서비스분야 등 사무계열 자격의 응시요건은 제한없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급속한 지식·정보화로 능력 중심사회 정착이 요구되는 바, 이에 부응하는 국가자격 검정의 응시요건 마련 (2001년 하반기)
 - 특히 국가자격 검정의 응시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요건의 합리적 조정

③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교육부, 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자격의 공인제도가 법상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절차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
- 자격기본법 제정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공인실적 전무
- 국가의 자격관리 독점체제로 민간검정기관의 활성화 저해
 - 국가기술자격검정이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에 독점
- 자격관리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
 -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 각개별법상의 규제중복 및 상충 현상과 함께 법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불필요한 규제 및 불합리한 법체계 정비(2000년 하반기)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각 개별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정비
 - 관련법령의 통·폐합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개선(2000년 하반기)
 - 민간자격·국가자격의 설정기준 명문화
 -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및 절차등 구체화
- 민간자격 검정기관의 활성화(2000년 하반기)
 -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의 위탁확대를 통한 민간자격 검정기관의 활성화

④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보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생산방식과 인력고용 형태에 변화 초래
 - 텔레워크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자신의 집 등 전통적인 작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재택근로 형태의 근로 증가
- 증가추세에 있는 재택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필요
 - 「재택근로자의 보호지침」을 마련·시행 함으로써 재택근로의 활성화 도모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재택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시행(2000년 하반기)

⑤ 휴일·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 또한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월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강구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위 논의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2000년 하반기)

⑥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도 있다고 규정
 - 계약직 근로계약은 종래에는 주로 단순·보조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직이나 관리직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연봉제의 도입으로 능력주의 노무관리의 한 방식으로 전 산업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계약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직장상실의 위험이나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계약의 편법적 간신이 반복되는 현상이 야기
- ※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사용자가 자유로 1년을 넘는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의 변화에 적합하게 근로계약기간을 합리화할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근로계약기간을 합리화하여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2001년 하반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현행 1년 초과금지에서 1년이상의 기간으로 하되
 - 동 기간을 초과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함
- ※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으로서 기간을 통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방안검토

⑦ 여성보호제도 개혁(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금지규정은 여성 과 보호조항으로서 여성의 승진, 직업선택에 제한을 가져와 고용기 피요인이 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금지 등 여성특별보호규정은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기피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화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음.
- 생리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청구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9년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벌칙 조항까지 추가되었음
 -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성고용에 있어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여성 고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률도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무급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지할 필요
- ※ 현재 생리휴가를 명시해 놓은 나라는 일본,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무급으로 되어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모성보호강화를 위한 출산휴가기간 확대등의 일정과 병행하여 여성특별보호규정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2001년 하반기)
 - 여성과보호조항은 폐지하되, 임산부 및 3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시간외근로 제한은 모성보호 측면에서 계속 유지
 - 생리휴가제도 역시 폐지하거나,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
 - 또한 생리휴가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임산부에 대하여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유급건강검진휴가를 부여

⑧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안정서비스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취업알선, 진로상담 및 직업정보의 제공에 관련된 사항을 직업 안정법과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 인적자원개발(HRD)정보시스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의 합리적 집행과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이들의 취업알선, 능력개발지원 등이 통합적 정보망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나,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미흡
-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정보간 연계미흡 등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생산적 복지와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강화(2001년 상반기)
 - 2000년까지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의 정보망,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 등과 연결하여
 - 생산적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
- ※ 구체적으로 WorkNet에 복지정보를 접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
- 관련 민간기관들과의 연계 강화(2001년 상반기)
 - 2001년까지 HRD와 관련된 공공 기관들의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여 노동시장정보, 복지정보 및 여타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업무 연계를 도모

- 우선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공단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
- ※ 장기적으로는 (전문, 대)학교와 경총, 우수 민간직업안정기관 등의 기관들과 기업들이 파트너쉽(partnership)을 구성하여 정보의 다양화 및 업무의 특화를 추진.
- 국가적 HRD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 형성(2001년 하반기)
 - 교육, 재경,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와의 업무협력 및 상호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
- ※ 각 부처의 정보망 중 인적자원개발(HRD)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의 개발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
- ※ 정보의 연계방안으로 'Data Warehousing'을 통하여 새로운 인력 개발D/B를 구축하거나 또는 각 부처의 정보D/B를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⑨ 퇴직금제도 및 퇴직충당금제도 개혁(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상 퇴직금제도는 사내적립제도와 사외적립제도인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등이 있으나
- 노령화사회가 진전되고 임금지급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분야 마련 필요
- 현행 퇴직금제도중 사내적립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은 퇴직당시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
 - 퇴직금에 대한 지불보장이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의 도산시 퇴직금의 지불불능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
- 임금 및 퇴직금의 부분적인 지불보장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의 0.2%)이 설립되어 사용주가 지불 불능상태에 처한 경우, 이 기금으로부터 3개월분까지의 퇴직금을 지불보장 받게 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부분적인 보장에 불과하다는 평가
- ※ 주한외국인 상공인회의소에서는 국가연금 프로그램이 제도화되면, 현행의 강제적인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연구용역 실시중에 있으므로
- 동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 및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2001년 하반기)

⑩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일정규모이상의 사무실 등) 등록 요건이 필요하며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인터넷 확산 등 시대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자직업소개업을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유익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2000년 하반기)

⑪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규제개혁(노동부)

□ 현황 및 문제점

- 항만 하역업 수행은 하역업자가 직접 고용한 상용근로자와 항운 노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일용근로자(노조원)로 이루어짐.
- 항운노동조합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조합원을 공급하고 있음.
 - 항운노조원만을 사용토록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관행으로 항운노조원을 사용

* 항운노동조합 현황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57개 단위노동조합에 약 33,000명의 조합원 가입
- 이중에서 11,000명은 항운노조 소속으로 단순노무작업에 종사하고, 13,000명은 하역업체 소속으로 장비운전이나 현장관리업무 담당
- 현행 항만노무공급체계는 『근로자공급사업』이라는 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진 사회적현상으로
 - 직업안정법의 개정만으로 항만노무공급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해양수산부의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협의체를 운영하되,
 - 협의를 거쳐 항만근로자 상용화 추진(2001년 하반기)

4. 健全하고 安全한 情報化시스템 構築 ·
運營을 위한 制度整備

① 우수쇼핑몰등에 대한 포상·인증제도 개선(산자부, 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 쇼핑몰 등에 대한 포상·인증제도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시행
 - 산업자원부는 사이버몰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전자거래표준원 등 민간기관의 주도로 추진하게 하는 '우수 사이버몰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부는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시행중
- 유사한 포상·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쇼핑몰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과 함께 정책혼선의 우려
 - 중복적인 포상·인증제도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소위 '줄서기'의 역할을 하여 현실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 심사기준에 있어서도 일부 중복이 존재하여 각 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부처간 업무혼선의 가능성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우수 쇼핑몰 등에 대한 포상·인증제도의 차별화(2001년 상반기)
 - 현재 두제도가 민간주도로 추진중이며 해외사례를 감안할 때 제도의 통합보다는 두 제도의 성격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혼란과 정책혼선을 방지도록 함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보호분야,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을 중점 심사하고,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분야와 시스템 안전·신뢰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
 - 향후 미국·일본·EU 등과의 쇼핑몰 상호인증제도의 협약 체결을 전제로 수익모델이 있는 실질적인 인증제도로의 변환 모색

②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공정위)

□ 현황 및 문제점

-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금지와 관련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법 제32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따라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 시행중이나
 -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도입계약 체결 금지(법 제32조)
 - 부품 등 구입처, 수출지역, 거래상대방, 거래수량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도입계약 체결 금지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형 및 기준 고시)
-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지적재산권의 권리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공정거래법 제59조)
- 따라서,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심사기준(고시) 마련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
 - 현행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유형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2000년 하반기)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공정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 규정 미비
 - 전자상거래 이용과정에서 노출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장치 미흡
 - 전자상거래 업자의 표시광고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의무 고지 등 보호 장치 미흡
 - 전자상거래 감시체계·소비자 보호장치 및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 미흡
 - 가상공간 및 국제간 거래를 동반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령의 적용에 한계
 -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전자상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법 제조의 “주된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 곤란하고, 외국 서버에 개설된 쇼핑몰의 경우에는 적용 및 제재 곤란
 - “판매업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회원제 사이트의 상품판매, mall-in-mall 출현 등으로 적용에 한계
 -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불수단에 대한 규제근거 미비
- ※ 관련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근거법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하여 전자상거래관련 규정 정비 및 소비자보호장치 마련(2001년 상반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 추진 및 인터넷 표시광고의 기준 제정

- 법 적용 대상을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품의 판매를 매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책임 부담을 지우는 장치 마련
 - 전자상거래에서 노출되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 보호 기준 마련
 - 전자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법률상 근거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약관 마련(2001년 하반기)
- 새로운 지불수단 및 거래형태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및 사용 확산(전자화폐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등)

④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전화에 의한 폭력·협박·희롱등이 발생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수신자가 증빙자료를 전화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동조항은 전화폭력·협박·희롱시에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
- ※ 발신번호표시서비스란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통화개시전에 발신번호표시서비스 가입자의 전화기에 내장 또는 부착된 장치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로서, 전화폭력차단·부재중 전화번호표시·유선전화의 데이터 부가서비스기능 구현측면에서 유용함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을 신설(2000년 하반기)
 - 발신번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수신인이 요구하면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발신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능도록 함
 - 협박·폭력전화등으로부터 사생활보호를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13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발신자의 번호송출 거부시에도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112)·화재조난신고(119) 등 특수번호전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수신자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⑤ 민간부문 개인사생활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사생활보호에 관한 제도는 다수 법령에 산재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주요 보호 대상이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수집, 취급, 이용, 제공 등을 규율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단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
 - 기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 개별법령에도 관련 규정 산재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일반법이 없으며, 현행 규정도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
-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법상 사각지대가 존재(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점, 일반 백화점)하고, 전문분쟁조정기구 부재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곤란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입법 추진(2000년 하반기)
 -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개인정보제공거부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등
- 정보화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자의 범위를 확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리점 및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저장·처리하는 일정한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
- 개인정보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분쟁조정제도 강구
 - 상대적열세에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 사전예방 및 사후에 신속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⑥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 행위 방지 대책(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등 인신공격이나 인권침해 정보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 조치만으로는 온라인 공간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확립하기에는 한계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0년 하반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마련
 -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정보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사업자에게 정보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그밖의 '바른말 쓰기', '실명쓰기'등 네티즌윤리강령 실천운동 및 네티켓 교육·홍보 강화

⑦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암호제품의 제작·생산·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민간부문의 암호이용이 저조
 - 불법적인 암호이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향상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암호이용 활성화 필요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민간에서의 암호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암호이용촉진법」 제정(2001년 하반기)
 - 민간의 암호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이용자의 준수사항 명시
 - 암호키 분실·훼손 등에 대비한 암호문 해독 지원체계 구축

⑧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추진(정통부, 청보위)

□ 현황 및 문제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해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불건전정보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통신에 대한 모니터링(신고접수 포함) 및 심의를 통하여 정보삭제 및 정보제공자 ID제한 등 사후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행 심의제도로는 인터넷보급으로 크게 늘어난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는데에 한계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도록 함(2001년 하반기)
 -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정보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부모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도입
- 동 제도의 조속도입을 위하여 올해안에 시범사업을 우선실시하고 운영기관, 기준설정 등 제도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화 추진 (2000년 하반기)

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정비(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과 '국가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에 의해 국가기밀 보안중심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이 없음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정보화 진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주요 사회시설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2000년 하반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평가하고 보호대책을 마련
 - 침해발생시 대응과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방안 강구

⑩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정통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 창작성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요건도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창작성'이어서 보호요건이 모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본질과 달라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는 한계가 있음
-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핵심은 소재의 수집, 가공, 표현을 위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 EU는 데이터베이스지침을 마련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정보수집물침해방지법(Collections of information antipiracy act) 제정을 추진중

□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DB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DB제작자에게 재산권적 권리부여와 함께 DB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DB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한계를 명확화 (2000년 하반기)
 - 공공기관DB의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등